

주주 귀하

제7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7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상법 제542조의4, 동법시행령 제31조의 ①, ②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(전자공시시스템) 함으로써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9년 3월 28일(목요일) 오전 08:30
2. 장 소 :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94 (주)유유제약 제천공장 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
 - 1) 보고안건
 -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
 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
 - 2) 부의안건
 - 제1호 의안 :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 - ① 1주당 배당금액 : 보통주 - 현금 200원
 - 1우선주 - 현금 210원
 - 2우선주 - 현금 210원
 - ※ 제1호 의안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진행
 - 제2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
 - 제3호 의안 : 이사선임의 건(사내이사1명, 사외이사3명)
 - 3-1호 유원상 : 신규선임(사내이사)
 - 3-2호 안형문 : 재선임(사외이사)
 - 3-3호 강승안 : 재선임(사외이사)
 - 3-4호 전창기 : 재선임(사외이사)
 - 제4호 의안 : 감사 위원 선임의 건(3명)
 - 4-1호 안형문 : 재선임
 - 4-2호 강승안 : 재선임
 - 4-3호 전창기 : 재선임
 -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(10억)
 - 제6호 의안 :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의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및 전자공시(<http://dart.fss.or.kr>)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 - 직접행사: 신분증
 - 대리행사: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
2019년 3월



(주)유유제약



대표이사 최인석(직인생략)

정관 일부 변경 (안)

| 현 행 | 변 경(안) | 비 고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 [목적] 18. 전 각호에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| 제2조 [목적] 18. 통신판매업 19. 전 각호에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| -사업목적 추가 |
| 제8조 [주권의 종류]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 | 제8조 [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]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| -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변경 |
| 제10조 [명의개서대리인]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| 제10조 [명의개서대리인]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| -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변경 |
| 제11조 [주주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]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0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 | 제11조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| -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변경 |
| 제40조 [감사위원회의 직무] ②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. | 제40조 [감사위원회의 직무]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 | -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개정내용 반영 |
| 제47조 [외부감사인의 선임]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,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 | 제47조 [외부감사인의 선임]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,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| -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개정내용 반영 |
| 부칙 1. 【시행일】 이 정관은 제7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| 부칙 1. 【시행일】 이 정관은 제7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10조, 제11조 개정 내용은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 | |

이사 선임의 건

| 구 분 | 성 명 | 생년월일 추천인 | 주 요 약 력 | 회사와의 최근3년간의 거래내역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비 고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사 내 이 사 | 유원상 | 1974-03-03 이사회 | 컬럼비아대(미국) 경영대학원 석사 前Merrill Lynch(미국) 컨설턴트 前Novartis(미국) 뉴욕 | 없 음 | 특수관계인 | 신규선임 |
| 사 외 이 사 | 안형문 | 1981-02-10 이사회 |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前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現 대안회계법인 회계사 | 없 음 | 없 음 | 재선임 |
| 사 외 이 사 | 강승안 | 1941-03-13 이사회 | 중앙대 약학대학 졸업 前 (주)유유 사장 | 없 음 | 없 음 | 재선임 |
| 사 외 이 사 | 전창기 | 1935-05-25 이사회 |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前 (주)유유 감사 | 없 음 | 없 음 | 재선임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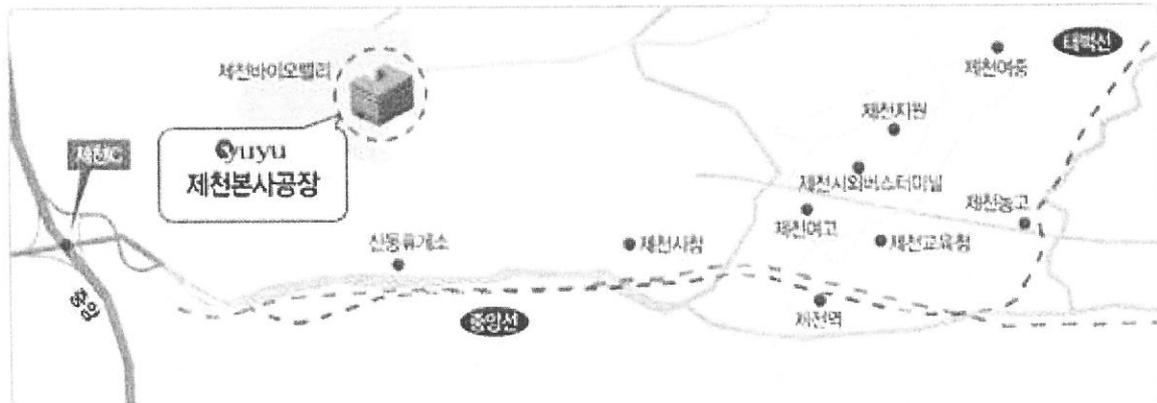
감사위원 선임의 건

| 구 분 | 성 명 | 생년월일 추천인 | 주 요 약 력 | 회사와의 최근3년간의 거래내역 |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역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| 안형문 | 1981-02-10 이사회 |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前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現 대안회계법인 회계사 | 없 음 | 없 음 | 재선임 |
|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| 강승안 | 1941-03-13 이사회 | 중앙대 약학대학 졸업 前 (주)유유 사장 | 없 음 | 없 음 | 재선임 |
|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| 전창기 | 1935-05-25 이사회 |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前 (주)유유 감사 | 없 음 | 없 음 | 재선임 |

※ 정기주주총회장 약도

- 대중교통: 제천역 또는 시외버스터미널 도착 후 택시 이용
- 자 가 용: 서울->중앙고속도로->제천IC(제천, 충주방면)->5번국도->제천교차로(우측 단양방면)
->남부순환로->(주)유유제약 공장

찾아오시는길



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

| 현 행 | 변 경(안) | 비 고 |
|--|---|--------------|
| <p>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 (특별공로금)</p> <p>①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전 제5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 경우 특별공로금은 당해 퇴직금의 50/100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| <p>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 (특별공로금)</p> <p>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전 제5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-문구수정</p> |